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지난해 4분기 전체 일자리 수(2,074만 9천 개)는 1년 전보다 29만 3천 개 늘어난 반면, 20대 이하 청년층(15~29세) 일자리는 같은 기간 9만 7천 개 감소한 312만 6천 개를 기록하면서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
- 청년 일자리의 질도 보건사회복지(10만 7천개), 숙박·음식(3만 9천개), 운수·창고(3만 8천개) 등의 택배·배달 라이더 등의 일자리 분야는 늘어난 반면, 공공 분야(1만 3천개 감소)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현행 ‘청년고용촉진 특별법’은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

3%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,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준보다 높은 4% 이상으로 상향해 청년을 채용 해오고 있습니다.

□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형편입니다. 서울시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사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.

□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, 정원 30명 이상인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 분의 5 이상으로 확대(안 제4조)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, 어려운 경제 여건에 힘들어하는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니만큼 개정안의 취지를 살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